2025년 2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지역자율형) 지원계획 공고

제조 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2025년도 2차 인천지역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		I I	·업	JH	
	١.	Л	П	_ / II	ш

(사업목적) 지역 제조 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산업의 특색과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기업 중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의 바이오 또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3~4p참고)
(지원규모) 82백만원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5.11.30.까지
(관리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인천서부지부
(사업내용)

- 지역 중점산업 집중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3가지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0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 서비스 프로그램별 사용가능금액 한도 상이

□ 추진절차

신청ㆍ접수		평가・선정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혁신바우처플랫폼 www.mssmiv.com	ightharpoons	평가 및 최종 지역별위원회	ightharpoons	관리기관·선정기업 (기업분담금 납부)	\Rightarrow	수행기관 매칭 및 사업수행
2.12(수) ~ 3.6(목)		'25.3월말		'25.4월 ~		'25.4월말 ~

- □ 신청기간 : '25. 2. 12.(수) ~ '25. 3. 6.(목) 18:00까지
 - 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 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플랫폼 오류가 발생 될 수 있으니 주의 필요
-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누리집에서 신청
 -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본(지)부 중 선택 가능
 - 동일 사업연도 내 동 사업 1회 참여 가능

□ 신청 전 유의사항

ㅇ 하기 유의사항을 확인 후 사업 신청 필요

신청 전 유의사항

- ◆ 신청 전, 혁신바우처플랫폼(www.mssmiv.com)내 [메뉴판]-[서비스검색]을 통해 세부 프로그램 확인 및 수행기관 확인 후 희망순위작성(사업별 신청서식 참조)
- ◆ 사업 신청 및 참여 중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리지침에 따라 참여 제한조치, 보조금 환수 및 정부 사업제재
- ◆ 선정된 수요기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수강, 협약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탈락 되며, 사업완료 후, 정산하지 않을 경우 환수
 - * 2자협약(중진공-수요기업) : 사업 선정 후 30일 이내 협약체결 및 자부담 납부 3자계약(운영기관-수행기관-수요기업) : 선정 후 50일 이내 체결
- ◈ 신청 및 최종선정 기업은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목적취지에 맞게 성실하게 참여
- ◈ 별지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에 명시된 항목만 바우처 사용가능
- ◈ 타 정부지원사업(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 등) 수행한 과업내용이 중복일 경우 신청불가

□ 신청 제외 대상

신청 제외 대상

- ◈ 정부·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 휴·폐업 기업
-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바우처 잔액 보유) 중인 업체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원대상 및 내용

- □ (지원대상)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①~②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③또는 ④번에 해당하는 기업
 -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사업장이 인천 소재*
 - * 본점 소재지 또는 주생산(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공장 소재지
 - ** 동일 법인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내용으로 중복 신청 불가
 - ②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소기업(별첨2 참고)이며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별첨3 참고)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으로, 표준재무제표 상 3년 평균 총 매출액의 50% 이상이 제품 매출에 해당하는 기업

- ③ 바이오 관련 산업 영위기업(바이오산업분류코드(KSJ1009)-한국 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연계표에 포함되는 제조 소기업)
 -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5자리 해당 여부 확인 : [별첨 4] 참조
- ④ 공장등록증 등 업종 분류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가 소재·부품·장비산업 범위에 포함되는 제조 소기업
 -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5자리 해당 여부 확인 : [별첨 4] 참조

□ (지원규모) 82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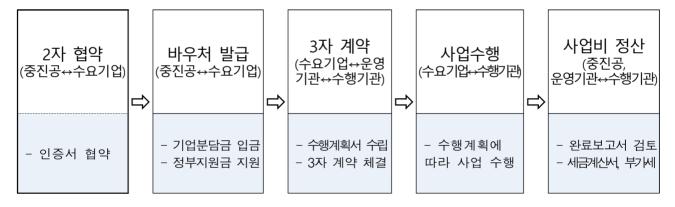
- □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0개 프로그램을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 다만, 융복합컨설팅은 먼저 협업 승인을 득한 이후 기술지원 및 마케팅 분야 신청 가능
 - **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분야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경영기술 전략	-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융복합 등 - 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대응 등)	15			
	AX·DX 추진전략	- 스마트공장 진단 및 AX·DX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15			
	시제품 제작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30			
기술	시스템 및 시설구축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생산정보 디지털화 지원 등	20			
지원	IP기반 기술사업화	- 기술이전에 필요한 자문비 및 수행대행비 지원 - 지식재산권(IP) 획득 지원 (분쟁대응 포함) - 지재권 진단, 신제품 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15			
	제품시험인증 연구장비활용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등 시험·인증·연구장비활용 -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분야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u>한도</u> (백만원)	
	디자인 개선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15	
	브랜드 지원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20	
마케팅	홍보물 제작	기업·제품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브로셔, 카달로그,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20	
	광고 지원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 (온라인 광고, 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등)		

-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 한도는 정부지원금 기준 신청·지원한도를 의미하며 최대 50백만원
- \square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rightarrow ② 바우처 발급 \rightarrow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45 ~ 85%)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85%	15%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5%	25%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65%	35%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45%	55%

□ (바우처 사용기간) '25년 11월말까지 최종결과물 제출 ※ 사용기간 엄수

□ 신청서류

연번	구분	서류명	내용
1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2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3		사업계획서	[별첨1] 서식(1,2)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4	필수 ¹⁾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5)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7		지역자율형 (바이오,소재·부품·장비) 증빙서류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최근 3개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8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9		지식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온라인 작성
10	해당 시 (최대 8점)	●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확인서, ❷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③유연근무제 활용기업 ④진로제시컨설팅 처방기업 ⑤중소기업밀집지역 '주의·심각' 단계 입주기업(서식3) (⑤,♂,③,⑨,⑩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없음)	공통우대 가점 사항 ²⁾ (① ~ ① 각 1점, 최대 5점)
(1)		⑦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④정부, 지자체가 주관하는 스마트공장 사업선정 또는 완료기업 ⑤혁신형 기업	지역자율우대 가점 사항 ³⁾ (⑦~©각 1점, 최대 3점)

- * 증빙서류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해야함
- 1)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2) ① 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② 협업승인 기업, ③ 유연근무제 활용기업, ④ 재기바우처 진로제시컨설팅 처방기업, ⑤ 중소기업 밀집지역 '주의·심각' 단계 입주기업, ⑥ 원자 재 수입 영향 높은 기업(석유정제, 화학,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1차금속 제조업), ⑦ 지역 현신공모사업 선정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③ 스마트혁신지구 입주기업, ⑨ 중소기업 챌린지진단 수진기업, ⑩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소재 기업
- 3) ②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④스마트공장 선정 관련 협약서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 /실적 확인서, ⑤이노비즈확인서 또는 메인비즈확인서 또는 벤처기업확인서

□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1~2)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⑥)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 ⑤, ⑧)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21년, '22년, '23년) 제출
- (⑦) 공고문 [별첨4]를 참고하여 지원대상 요건에 필요한 증빙자료 혁신 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9) 각 지식재산권 및 인증서 사본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유효기간 등 확인)
 - * 해외 지적재산권 및 인증의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한 국문 번역본 자료와 함께 제출(내용 확인이 불가할 경우 실적 불인정)
- ** 최대 15건 이내에 한하여 제출
-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해당 항목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만 인정
- (⑩, ⑪) 공고문 참고(가점 대상 항목 확인)하여 해당 증빙자료 혁신 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 우대가점 연번(Q(Q~G)) 및 (D(Z)~G))는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업로드한 증빙자료만 인정
- □ (평가절차) 요건검토 → 서면심사 → 현장평가 → 지역별위원회 →최종 선정
 - (요건검토) 제조 소기업(평균매출액) 여부, 신청 제외 대상 등을 확인
 - (서면심사) 사업계획서 심사 및 바우처 신청금액의 적정성 검토· 조정하여 지역별 지원규모의 1.5배수 내외 기업 추천
 - (현장평가) 서면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역량 확인 및 바우처 분야별 지원 적정성 검토
 - (지역별위원회)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3. 문 의 처

구분	전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55
중진공 인천지역본부	032-837-7032(연수,계양,남동,부평)
중진공 인천서부지부	032-560-2377(그 외 지역)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02-3771-1100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신청 서식

【서식1】사업 계획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계획서

1. 회사연혁

년 월	주 요 내 용 (설립, 상호/대표자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2. 대표자 경력

		졸업역	견월	학교	학과(전공,계열)	졸업 수료 중퇴
대	학력					
	, ,					
丑		ار ح	71.	7 7 7	그미리 어조	ラ ズマ ೧ /୮ - ハ ロ\
		기	간	근 무 처	근무처 업종	최종직위(담당업무)
자	주요경력					
'	, , ,					
동경	중업종 종사기간	년	개월	포상 및 상훈		

3. 주요 거래처

-	구분	업 체 명 (연락처)	거래품목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비중 (%)	연간 거래액 (백만원)	거래기간	대금회수 기간
							개월	일
매	국내						개월	일
매 출 처							개월	일
처	해외						개월	일
	에퍼						개월	일

4. 주주현황[주식 보유順으로 기재]

(20 년 월 일 현재)

주주명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소유주식 금액(백만원)	비율	주주명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소유주식 금액(백만원)	비율

5. 주요 생산제품 및 보유기술

제품용도 및 특성 (생산품 설명)	현재 주력 생산 제품의 용도 및 특성을 기재
제품생산 공정	주 생산제품의 생산 공정을 흐름순으로 기재
시 장 상 황 (주요 수요처, 경쟁업체 현황 등)	
기술품질 경쟁력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 기술, 품질, 가격 비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에 대해 간략히 기술, 기술개발환경(기술개발 조직현황, 설비 보유 여부 등), 품질관리 현황 등 작성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현황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및 인증현황 작성(증빙서류 제출필요) 지적재산권은 특허, 상표권, 디자인 등을 전부 포함, 인증은 국가 또는 국가의 공인된 기관이 승인하여 발행한 인증서 기준(ex. KS, KC, CE 등)

5-1. 바우처 사업 참여이력 및 사업화 진행현황(참여이력 보유 기업)

참여연도		매출 발생현황 (단위 : 천원)	사업 참여 이후 발생한 매출액을 천원단위로 기제		
참여 서비스 (프로그램)		고용창출 효과 (단위 : 명)	사업 참여 이후 발생한 신규 고용 인원수 기재		
주요 성과	바우처 사업을 통해 추진한 협약과제 이행 결과와 이를 통한 경영 개선 이행수준, 개선 성과, 추가적인 사업화 등 주요성과 및 환류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				

[※] 사업 참여이력을 보유한 기업에 한하여 작성(필수), 허위 기재 또는 미기재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6. 바우처 지원내용 및 추진계획

6-1. 수행 과제명

컨설팅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중 수행하고자 하는 분야의 과제명(주제)을 작성. 신청하지 않는 분야는 삭제(ex.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원가분석 컨설팅)
기술지원	(ex. 모니터 전력 효율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마케팅	(ex. SNS, 비대면 홍보를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

6-2. 희망 수행기관

혁신바우처플랫폼 홈페이지 내 [메뉴판]-[서비스검색]에서 신청기업이 작성한 "6-1.수행 과제"가 가능한 수행기관들을 확인 후 희망 순위를 **필수로 작성. 미등록 기관은 미등록으로 체크**

괴서티 1스이	00권서티	플랫폼 내 V 등록 2001	OV 01 7.01	플랫폼 내	V 등록
예시) 컨설팅 1순위	OO컨설팅	등록여부 □ 미등록 2순위	OX연구원	등록여부	<i>□ 미등록</i>

7) 21 7:1	1 & 61	컨설팅 프로그램	플랫폼 내	□ 등록	ባ ኤ ለነ	컨설팅 프로그램	플랫폼 내	□ 등록
컨설팅	1단위	수행기관 1순위	등록여부	□ 미등록	2순위	수행기관 2순위	등록여부	□ 미등록
						<u> </u>		
기술	ا دم د و ا	기술지원 프로그램	플랫폼 내	□ 등록	امدما	기술지원 프로그램	플랫폼 내	□ 등록
-1.01	1순위				2순위			
지원		수행기관 1순위	등록여부	□ 미등록		수행기관 2순위	등록여부	□ 미등록
_1 _1 _1	1 2 01	마케팅 프로그램	플랫폼 내	□ 등록	امحما	마케팅 프로그램	플랫폼 내	□ 등록
마케팅	I 순위	스케키키 1스이	도로시ㅂ	□ 미등록	2순위	스케키키 2스이		ㅁᆔ도ㄹ
		수행기관 1순위	등록여부	⊔ -। চ ব		수행기관 2순위	등록여부	□ 미등록
v Zell	※ 조레레웨데의 이수를 가입니다. 이 레티 HH 카파티에							
※ 중내	※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신청기업은 마케팅 부분 작성불필요							

6-3. 과제개요

바우처를 지원받아 수행코자 하는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 수행과제에 대한 개괄적 소개, 용도, 기능, 사용처, 이미지, 목표시장 및 시장진입 가능성, 사업화 준비도 등을 작성

6-4. 필요성 및 차별성

바우처 지원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 타 제품과의 기술, 디자인 등과의 차별성 등을 작성

6-5. 추진내용

신청 분야별 적용 및 활용분야, 추진계획, 추진 준비현황, 달성목표 등을 작성

6-6. 지원효과

바우처 지원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 향후 매출로의 연계 가능성, 예상매출 성과, 고용창출 효과,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기재

고용창출	고용 증가율	(%)	전년대비 고용 인원 증가율(%)	고용보험가입
002	신규 고용인원수	(명)	인원 수	인원 기준
ᆒᅕᄌᆒ	매출액 증가율	(%)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	ਗੈਧਗੀਰ ਹੈਣ
매 출중 대	매출 증가액	(천원)	전년대비 총매출액 중가액(천원)	재무제표 기준

※ 기재한 예상 성과는 향후 완료점검 및 성과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음

7. 사업비(바우처 금액) 조성 내역

그 ㅂ	신 청 분 야					
구 분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합계		
정부보조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업분담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정부보조금 지원비율 : 매출액 3억원 이하(85%), 3억원~10억원(75%), 10억원~50억원(65%), 50억원~120억원(45%)

120억원 초과(40%)

* 기업별 바우처 지원한도: 50,000천원,

8. 추진일정[빗금색칠 혹은 Bar 표시]

신청분야	'25년								
	3	4	5	6	7	8	9	10	11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 중대재해는 마케팅 작성불필요

9. 최근 3년간 정부 지원사업 및 과제참여 현황

과제명	주관부처	참여과제 내용	참여년월

10. 혁신바우처사업 추진 총괄책임자

성 명		직 위		휴대전화			
최종학력 및 전공	예시)대졸, 경영학	생년월일		이메일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고		
경 력	~						
	~						
기타 특기사항	수상경력특허 출원 및 등록 등						

【서식2】 융복합 컨설팅 협업계획서('컨설팅'-경영기술전략 내 융복합 신청희망 기업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융복합컨설팅) 협업계획서

	협업체	기본정보[신청시,	주관기업이	전담작성
--	-----	-----------	-------	------

=	구 분	기 업 명	대표자	설립연도	매출액(천원) ^{**}	생산품
	주관기업*					
협업체						
구성	참여기업***					
			·			

^{*} 동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 평가, 협약·계약 및 정산 등 진행(모든 평가는 주관 기업 대상 실시)

□ 협업 추진체계

기업명	역할분담	협업비중(%)	융합 공동기술개발(제품) 설명		
	예)생산				
	예)마케팅		1 1 1 - 1)	
	예)디자인		제품사진	상세설명	

□ 공동협력방안

구 분			협	력 방 안	
제품개발 및 개선					
생산					
사업화					
	비즈니스모델	□ B 1	to B	☐ B to C	☐ B to G
협력모델	판로대상	국내			
	선도네싱	국외			

^{**} 매출액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21년, '22년, '23년) 제출

^{**} 수행기관과 협업체 구성은 제한

【서식3】중소기업 밀집지역 '주의·심각' 단계 입주기업 확인서 (해당시)

기관명	OO테크노파크 위기지원센터		
센터장 성명		담당자 성명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연락처	

신청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담당자명		담당자 부서/직위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연락처	000-0000-0000
주 소 (도로명 상세주소)	(00000)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요청내용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가점 확인		

가점 검토의견	위 신청기업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가점대상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서 유효기간	2025.00.00. ~ 2025.00.00.

2025년 0월 0일

ㅇㅇ테크노파크 위기지원센터장 OOO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귀중

제조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분류기호 "C"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20 (2) -1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담배 제조업	C12	
17.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8.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3.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4.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5. 산업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다.
- * 위 표 제23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 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 위 표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은 지원불가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 평균 매출액 산정 방법

○ **법인 및 개인** : 평균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3년간('21년 ~ '23년 표준재무제표 기준)의 매출액 평균으로 산정

설립일자별 구분 (창업·합병·분할일)	평균 매출액 산정방법
'21년.1.1 이전 설립 기업	- '21년, '22년, '23년 매출액 합계를 3으로 나눈 금액
'21년 설립	- '22, '23년 매출액 합계를 2로 나눈 금액
'22년 설립	- '23년 매출액
'23.1月 [~] '23.11月 설립	- '23년 매출액을 '23년 영업월수'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 * 영업월수 : 설립월의 다음달부터 설립연도의 12월까지의 개월 수
'23.12月 설립	- '23년 매출액을 설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24년 설립기업	- 평균 매출액 예상액 기입('24년 표준제무제표 발급 전)
'25년 설립기업	- 평균 매출액 예상액 기입

☞ 매출액 산정 예시(개인)

- 2021.3.14에 창업(합병, 분할)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21년, '22년, '23년 매출액의 합을 3로 나눈 금액을 평균매출액으로 함
- 2023.3.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23년 매출액을 9(4월~12월)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
- 2023.12.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23년 매출액을 12.14부터 12.31까지의 18일로 나누어 1일 평균 매출액을 구하고,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

지역자율형[바이오, 소재·부품·장비] 혁신바우처 업종 범위 코드

1 바이**오**

KS J 1009	KSIC(11차)	KSIC 분류명 (11차)
바이오의약	C21100 C21211 C21212 C21230 C21309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생물 의약품 제조업 합성의약품 및 기타 완제 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제품
바이오 화학 및 에너지	C20112 C20119 C20202 C20203 C20312 C20313 C20322 C20422 C20423 C20423 C20495	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바이오식품	C10519 C10520 C10839 C10897 C10899 C10901 C10902 C10903 C11119 C11121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 배합 사료 제조업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기타 발효주 제조업 주정 제조업
바이오환경	C29175 C29176	기체 여과기 제조업 액체 여과기 제조업
바이오의료기기	C21301 C26299 C27112 C27199	채외 진단 시약 제조업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바이오 장비 및 기기	C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 한국바이오협회에서 활용하는 분류코드 대조표 활용

② 소재·부품·장비(제조업만 지원가능, 출판업 등 제외)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10. 18.>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제2조 관련)

1. 소재ㆍ부품의 범위

1. 1. 1 6 7	ц 'I	
대상업종(한국표	적용범위(소재·부품)	한국표준산업
준산업분류번호)		분류번호
섬유제품	면 방적사	13101
제조업(의복	모 방적사	13102
제외)(13)	화학섬유 방적사	13103
	연사 및 가공사	13104
	기타 방적사	13109
	면직물	13211
	모직물	13212
	화학섬유직물	13213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13219
	편조 원단	13300
	솜 및 실 염색 가공품	13401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품(의복 및	13402
	직물 제품에 염색한 것은 제외한다)	
	날염 가공품(의복 및 직물 제품에 날염한 것은 제	13403
	외한다)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품	13409
	부직포 및 펠트	13992
	특수사 및 코드직물	13993
	표면처리 및 적층직물	13994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13999
펄프, 종이 및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17103
종이제품	위생용 원지	17106
제조업(17)	기타 종이 및 판지	17109
화학물질 및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20111
1	ı	'

화학제품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20119
제조업(의약품	수소	20121
제외)(20)	산소, 질소 및 기타 산업용 가스	20122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핵연료 가공품은 제외한	20129
	다)	
	무기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20131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20132
	합성고무	2020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20202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20203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가정용 화학	20321
	살균 및 살충제는 제외한다)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가정용 생물 살	20322
	균 및 살충제는 제외한다)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20411
	인쇄잉크 및 회화용 물감(그림물감은 제외한다)	20413
	계면활성제	20421
	감광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20491
	접착제 및 젤라틴	20493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20499
	합성섬유	20501
	재생섬유	20502
의료용 물질 및	기초 의약 물질	21100
의약품	체외 진단 시약	21301
제조업(21)		
고무 및	고무 타이어 및 튜브	22110
포 · ㅈ 플라스틱제품	고무 패킹류	22110
제조업(22)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22192
,, — ப (33)	그 외 기타 고무제품(고무매트, 고무보트, 기타 고	22199
	무제품은 제외한다)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22211

	플라스틱 필름	22212
	플라스틱 시트 및 판	22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22214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22241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22249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22292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주방용품, 가구용 제품,	22299
	헬멧, 사무 및 문구용품, 기타 플라스틱 제품은 제	
	외한다)	
비금속 광물제품	판유리	23111
제조업(23)	안전유리	23112
	기타 판유리 가공품	23119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23121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23122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23129
	정형 내화 요업제품	23211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2321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세면기, 변기, 욕조, 기타	23222
	위생도기제품은 제외한다)	
	석회 및 플라스터(플라스터는 제외한다)	23312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23991
	연마재	23992
	비금속광물 분쇄물	23993
	암면 및 유사 제품	23994
	탄소섬유	23995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아스팔트	23999
	성형제품은 제외한다)	
1차 금속	합금철	24113
제조업(24)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24121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24122
1	l	l

	철강선	24123
	주철관	24131
	강관	24132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24133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24191
	그 외 기타 1차 철강	24199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24211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24212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24213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24219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24221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24222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24229
	기타 1차 비철금속	24290
	선철 주물 주조제품	24311
	강 주물 주조제품	24312
	알루미늄 주물 주조제품	24321
	기타 비철금속 주조제품	24329
금속가공제품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25121
제조업(기계 및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25122
가구 제외)(25)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25123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25130
	무기 및 총포탄(부품에 한정한다)	25200
	분말 야금제품	25911
	금속 단조제품	25912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25913
	그 외 금속 압형제품(가정용 압형제품은 제외한다)	25914
	금속 열처리제품	25921
	도금제품	25922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제품	25923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품	25924
	그 외 기타 금속가공품	25929

	Ţ	
	톱 및 호환성 공구	25934
	볼트 및 너트류	25941
	그 외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25942
	금속 스프링	25943
	금속선 가공제품(와이어로프에 한정한다)	25944
	피복 및 충전 용접봉	25995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부품에 한정한다)	25999
전자부품,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26111
컴퓨터, 영상,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26112
음향 및	발광 다이오드	26121
통신장비	기타 반도체소자	26129
제조업(26)	액정 표시장치	26211
	유기발광 표시장치	26212
	기타 표시장치	26219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26221
	경성 인쇄회로기판	26222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26223
	전자부품 실장기판	26224
	전자축전기	26291
	전자저항기 및 전자카드	26292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26293
	전자감지장치	26294
	그 외 기타 전자부품	26299
	기억장치(휴대용 저장장치, SSD는 제외한다)	26321
	컴퓨터 모니터(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모니터는	26322
	제외한다)	
	컴퓨터 프린터(부품에 한정한다)	26323
	기타 주변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6329
	유선 통신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6410
	방송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6421
	이동전화기(부품에 한정한다)	26422
	기타 무선 통신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6429

의료, 정밀,	텔레비전(부품에 한정한다)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부품에 한정한다)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음향기기(부품에 한정한다)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부품에 한정한다) 방사선 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6511 26519 26521 26529 26600
광학기기 및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7112
시계 제조업(27)	치과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7191
	치과기공물(부품에 한정한다)	27192
	치과용 임플란트(부품에 한정한다)	27193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7194
	안경 및 안경렌즈(부품에 한정한다)	27195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7199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부품에 한정한다)	27211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부품에 한정한다)	27212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부품에 한정한다)	27213
	속도계 및 적산계기(부품에 한정한다)	27214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7215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7216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7219
	시계 및 시계부품(시계부품에 한정한다)	27220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27301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부품에 한정한다)	27309
전기장비	전동기 및 발전기	28111
제조업(28)	변압기	28112
	에너지 저장장치	28113
	기타 전기 변환장치	28119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28121

	전기회로 접속장치	28122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28123
	일차전지	28201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28202
	기타 이차전지	28209
	광섬유 케이블	28301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28302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28303
	전구 및 램프(부품에 한정한다)	28410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28421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8422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8423
	기타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8429
	주방용 전기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8511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8512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8519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부품에 한정	28520
	한다)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8901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28902
	교통 신호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8903
	그 외 기타 전기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8909
기타 기계 및	내연기관	29111
장비 제조업	기타 기관 및 터빈	29119
(29)	유압기기	29120
	액체 펌프	29131
	기체 펌프 및 압축기	29132
	탭, 밸브 및 유사장치	29133
	구름베어링	29141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29142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부품에 한정한다)	29150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부품에 한정한다)	29161
승강기(부품에 한정한다)	29162
컨베이어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9163
기타 물품 취급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9169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9171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9172
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9174
기체 여과기	29175
액체 여과기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29177
사무용 기계 및 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9180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부품에 한정한다)	29191
분사기 및 소화기(부품에 한정한다)	29192
동력식 수지공구(부품에 한정한다)	29193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199
농업 및 임업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10
전자 응용 절삭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21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22
금속 절삭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23
금속 성형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24
기타 가공 공작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29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30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9241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9242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50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부품	29261
에 한정한다)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부품에 한정한	29269
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71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72

	산업용 로봇(부품에 한정한다)	29280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부품에 한정한	29291
	다)	
	인쇄 및 제책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92
	주형 및 금형	29293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99
자동차 및	자동차용 엔진	30110
트레일러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30310
제조업(3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30320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30331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30332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30391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30392
	자동차용 신품 의자(부품에 한정한다)	30393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30399
기타 운송장비	선박 구성 부분품	31114
제조업(31)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3120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부품에 한정한다)	31312
	항공기용 엔진	31321
	항공기용 부품	31322
	전투용 차량(부품에 한정한다)	31910
	모터사이클(부품에 한정한다)	31921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31922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부품에 한정한다)	31991
출판업(58)	시스템 소프트웨어(부품에 결합되는 임베디드 소	58221
	프트웨어에 한정한다)	
	응용 소프트웨어(부품에 결합되는 임베디드 소프	58222
	트웨어에 한정한다)	

비고

1.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 2.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은 소재·부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제조할 때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부품으로 본다.

2. 장비의 범위

대상업종(한국표	경 유 버 이 / 고나비)	한국표준산업
준산업분류번호)	적용범위(장비)	분류번호
전자부품,	기타 무선통신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6429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방사선 장치(부품은 제외한다)	27111
광학기기 및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27212
시계 제조업(27)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27213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7216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부품은	27219
	제외한다)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부품은 제외한다)	27309
전기장비	그 외 기타 전기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8909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부품은 제외한다)	29150
장비 제조업(29)	승강기(부품은 제외한다)	29162
	컨베이어장치(부품은 제외한다)	29163
	기타 물품 취급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9169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9171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부품은 제외한다)	29172
	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부품은 제외한다)	29173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부품은 제외한다)	29191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199
	전자 응용 절삭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21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22
	금속 절삭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23
	금속 성형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24
	기타 가공 공작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29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30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9242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50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29261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부품은	29269
	제외한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71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72
	산업용 로봇(부품은 제외한다)	29280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부품은	29291
	제외한다)	
	인쇄 및 제책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92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99
출판업(58)	시스템 소프트웨어(「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58221
	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	
	프트웨어에 한정한다)	
	응용 소프트웨어(「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58222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	
	웨어에 한정한다)	

비고

- 1. 장비는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 한정한다.
- 2. 장비 관련 부품은 장비범위가 아닌 소재ㆍ부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